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2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2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12월 21일

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-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‘주민생활지원과’신설과
- 복식부기와 과거사정리 전담 한시인력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○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(안 별표1)

- 총 정 원 : 1,499명(변동없음)
- 직급별 정원조정
 - 일반직 9급 : △1(162명 → 161명)
 - 일반직 5급 : +1(75명 → 76명)
- 기관별 정원조정
 - 읍면동 : △7(376명 → 369명)
 - 본 청 : + 7(597명 → 604명)

○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(안 별표2)

- 한시정원 연장 : 3명
 - 총무과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: 1(7급1명)
 - 회계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: 2(7급1명, 8급1명)
- 기한연장 : 당초2006. 12. 31 → 2008. 12. 31까지

라. 참고사항

-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-439('06.9.19)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
- 경상북도 정책기획관-960('06.10.20)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「주민생활지원과」 신설에 따른 일부직급 및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고 과거사 정리와 복식부기 전담 한시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총 정원은 1,499명으로 변동이 없으나, 직급별 정원조정을 1명하면서
 - 일반직 9급 정원 1명을 감원하여 161명
 -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7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
- 기관별 정원조정은
 - 읍면동 정원 7명을 감원하여 369명
 - 본청 정원 7명을 증원하여 604명으로 각각 조정 하였음

○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3명은

- 총무과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: 1명(7급 1명)
- 회계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: 2명(7급 1명, 8급 1명)
- 연장기간은 2006. 12. 31에서 2008. 12. 31까지 2년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